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731-6668 / 전송 733-9535~6

문서번호 재산 58421-254  
시행일자 1993.11.12.

	취급	시 장
	보존	3
	부 시 장	
수신 내부결재	재 무 국 장	기획관리실장 주택국장
	재 산 관 리 과 장	법무 담당관 예산 담당관
참조	재 산 처 분 계 장	시 민 과 장 회 계 과 장
	기 안 임 형 일	도시개발과장 회계심사계장 시유재산계장

제목 '93. 제5회 토지공매 및 '93. 제2회 토지수의매각

1. 체비지, 목동택지 및 시유잡종재산으로써 매각가능한 토지를 따로 붙임과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하며,
2. 일반경쟁 입찰시 2회 이상 유찰된 체비지와 목동택지 및 시유잡종재산을 각 우리시 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제8조 제1항 제16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3. 토지매각 내용을 1회 신문공고 후 공매는 1주간격 2회 실시하고, 수의매각은 '93.12.30까지 매각 실시하며, 예정가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산은 재감정하여 매각하고,
4. 토지매각 안내책자(홍보 편축물)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하므로써 토지매각을 촉진코자 합니다.

- 첨부 : 1) '93. 제5회 토지공매 및 '93. 제2회 토지수의매각 계획 1부.  
2) 체비지, 목동택지 시유잡종재산 매각공고 (안) 1부.  
3)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안) 각 1부.  
4) 토지수의계약 매수신청서 유권사항 1부.  
5) 재산목록 1부 끝

고시.공고  
1993. 11. 13.  
제1993  
2915

원본대조필  
김영민

## 서울특별시

## '93. 제 5회 토지공매및 제 2회 토지수의매각 계획

□ 매각재산	: 총	176 필지	193,309.02 m <sup>2</sup>	(58,476 평)
○ 공매재산	:	17 필지	12,020.4 m <sup>2</sup>	(3,636.2 평)
. 체비지	:	14 필지	10,272.4 m <sup>2</sup>	(3,107.4 평)
. 복동택지	:	1 필지	1,404 m <sup>2</sup>	(421.7 평)
. 시유잡종재산	:	2 필지	344 m <sup>2</sup>	(104.1 평)
○ 수의매각 재산	:	159 필지	181,288.62 m <sup>2</sup>	(54,839.8 평)
. 체비지	:	105 필지	70,666 m <sup>2</sup>	(21,376.5 평)
. 복동택지	:	45 필지	107,501.5 m <sup>2</sup>	(32,519.2 평)
. 시유잡종재산	:	9 필지	3,121.12 m <sup>2</sup>	(944.1 평)

### □ 매각방법

#### ○ 일반경쟁 입찰

- . 체비지, 복동택지 : 예정(공급)가격 공개, 1인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
- . 시유 잡종재산 : 예정가격 비 공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
- ※ 유찰 토지를 대상으로 필요 경우 현장 재 입찰 실시

#### ○ 수의계약

- . 체비지및 복동택지 : 예정 (공급) 가격 공개, 매각공고 후 가장 빠른날에 매수 신청한자중 최고 견적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각
- . 시유잡종재산 : 예정가격 비공개, 매각공고 후 가장 빠른날에 매수신청한자중 최고 견적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각
- ※ 복동택지매각 : 체비지와 유사한 성격의 토지이므로 서울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 준용(1인이상 유효한 입찰 성립, 예정(공급) 가격 공개, 가격 적용기간 1년)

□ 매각 일시 및 장소

○ 일반경쟁 입찰

. 일 시 : '93. 12. 7. (화) (10:00 ~ 11:00)  
- 1주간격 2차례 공매 : 12.7, 12.14 (10:00~11:00)

. 장 소 : 중구 구민회관 (2차는 우리시 입찰실 105호)

○ 수의계약 매각

. 일 시 : '93.12. 7. 부터 '93.12.30까지 (매일접수 : 공휴일 제외)

. 장 소 : 매수신청서 접수처 - 우리시 시민과  
매각부서 - 우리시 재산관리과

□ 공 고

○ 방 법 : 시중 3개 일간신문 게재 ( 15 cm × 7 단)  
- 일반지 2, 경제지 1.

○ 문 안 : 따로 붙임

□ 매수자 결정

○ 일반경쟁 입찰 : 유효한 입찰자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  
(복수동가 경우 추첨)

○ 수의계약 매각 : 전적가격 10% 이상 예치한자로 예정(공급)가격 이상 최고  
전적자 (복수동가 경우 추첨)

□ 계 약

○ 토지대금 납부 기산일

. 일반경쟁 입찰 : 낙찰일 다음날  
. 수의계약 매각 : 매각결정일 다음날

○ 계 약 일

. 낙찰일(수의 경우 매각결정일) 다음날을 계약일로 하고 10일내 계약체결,  
위 기간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매각 결정을 무효로하고 보증금은  
우리시로 귀속 조치.

. 택지취득 허가자의 경우 25일, 다른 법령에따른 승인등을 받아야 할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시유잡종재산의 경우 25일)

○ 계약서 (안) : 따로 붙임

부시청

시청

□ 토지 매각대금 수납

- 계약보증금 :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 및 수의계약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계약서 약정에 의거 수납 (체비지, 목동택지는 1년범위내, 시유잡종재산은 60일 이내)

□ 토지에정 (공급) 가격 결정

- 신규매각 토지 : 감정평가후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정후 경리관이 결정 (유효기간 : 체비지, 목동택지 1년, 시유잡종재산은 6월)
- 재 매각 토지 : 종전 심의사정 후 결정한 가격

□ 판촉물 (홍보 안내책자) 제작 배포 : 부동산 관심계층 대상 배포 2만부

- 우리시 홍보위 심의는 '93. 제 2회 공매시 홍보물 심의로 같음

□ 예산지출

○ 공 고 료 : 9,817,500 원

$35,000원 \times (15cm \times 7단) \times 110/100 \times 2사$	일간지 (8,085,000원)
$15,000원 \times (15cm \times 7단) \times 110/100 \times 1사$	경제지 (1,732,500원)

. 예산과목

관) 목신정개발비, 향) 사무비, ~~세항) 사무관리~~ (목) 수용비및수수료

. 지출방법 : 청구에 의하여 지출

○ 감 정 료 : 감정기관 청구에 의거 별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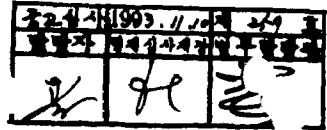
○ 판촉물 제작비 : 별도 계약 지출

시경

□ 행정사항

○ 우리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규정 제 22조에 의거 매각업무의 정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서식을 일부 변경 조정 사용함.

- 입찰서 (제 12호 서식)
- 입찰조서 (제 14호 서식) 및 입찰봉투
- 매매계약서 (제 16호 서식)
- 재산매수견적서 (제 17-1호 서식)



서울특별시공고 제1993- 호

### 체비지, 목동택지 및 시유잡종재산 매각 공고

체비지, 목동택지 및 시유잡종재산을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공고합니다.

1993. . . .

### 서울특별시장

- 1. 매각재산 : 총 176 필지 193,309.02 m<sup>2</sup> ( 58,476 평)
  - 필지별 재산목록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에서 배부
  - 공 매 재 산 : 17 필지 12,020.4 m<sup>2</sup> ( 3,636.2 평)
    - . 체 비 지 : 14 필지 10,272.4 m<sup>2</sup> ( 3,107.4 평)
    - . 목동택지 : 1 필지 1,404 m<sup>2</sup> ( 424.7 평)
    - . 시유잡종재산 : 2 필지 344 m<sup>2</sup> ( 104.1 평)
  - 수의매각재산 : 159 필지 181,288.62 m<sup>2</sup> ( 54,839.8 평)
    - . 체 비 지 : 105 필지 70,666 m<sup>2</sup> ( 21,376.5 평)
    - . 목동택지 : 45 필지 107,501.5 m<sup>2</sup> ( 32,519.2 평)
    - . 시유잡종재산 : 9 필지 3,121.12 m<sup>2</sup> ( 944.1 평)

### 2. 매각방법

- 예정(공급)가격 공개, 공매번호(재산번호)별 매각 (시유잡종재산 비공개)
- 공매시 체비지와 목동택지는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  
시유잡종재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유찰토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현장 재입찰 실시
- 수의계약 매각은 견적가격의 10% 이상 매수신청보증금 예치후 예치증과 견적서를 첨부 소정 신청서 작성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접수

### 3. 매각일시 및 장소

#### ○ 일반경쟁입찰

- . 일시 : '93.12.7. (화) (10:00 ~ 11:00)
  - 1주간격 2차례 공매: 12.7., 12.14. (10:00~11:00)
- . 장소 : 중구 구민회관 (2차는 서울시청 입찰실 105호)
  - 입찰참가시 준비사항 :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증, 인장  
(입찰서는 당일 현장 배부)

#### ○ 수의계약

- . 일시 : '93.12.7.부터 '93.12.30 까지
- . 장소 : 매수신청서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민과  
매각부서 :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 4. 매수자 결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유효한 입찰자로 예정가격이상 최고입찰자  
(복수동가 경우 추첨)
- 수의계약 매각 : 전적가격 10%이상 예치하고, 예정(공급)가격이상 최고  
전적자 (복수동가 경우 추첨)

### 5. 보증금 예치

- 공매번호 입찰액 (수의 경우 전적가격)에 대한 10%이상 금액을  
입찰(수의 경우 매수신청)전에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시청  
구내 위치)에 입찰 차수별로 예치하여야 함
  - 매수신청 보증금 예치후 5일 이내 신청치 않을 경우 본인 예금계좌로 전금

### 6. 보증금 처리방법

- 보증금 예치시 본인의 예금 온라인 계좌번호 소정란 기재
- 낙찰 또는 매수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 유찰 또는 매수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예금계좌로 전금
- 보증금 예치확인증은 입찰시(수의 경우 매수신청시) 동봉 제출

## 7. 입찰 무효

-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거나, 예치확인증이 없을 때
-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기시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되도록 동일인이 2중 입찰한 때  
(시유잡종재산의 경우)
-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 또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 8. 계 약

- 토지대금 납부 기산일
  - 일반경쟁입찰 - 낙찰일 다음날, 수의매각 - 매각결정일 다음날
- 계약일
  - 낙찰일 (수의 경우 매각 결정일) 다음날을 계약일로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매각 결정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우리시로 귀속 조치 할 수 있음.
  - 택지취득 허가자의 경우 계약체결시 택지취득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매수신청 보증금은 우리시로 귀속시킴.
  - 택지취득 허가자의 경우 25일,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등을 받아야 할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 (시유잡종재산의 경우 25일)

## 9. 대금납부 방법

- 계약보증금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으로 일괄 대체
- 체비지 및 목동택지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은 낙찰일 (수의 경우 매각결정일) 익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하되  
(분납의 경우 잔금의 50% 이상 금액납부)
  - 1) 60일까지는 원금을 납부
  - 2) 60일초과 6개월까지는 계약당시 소정금리(한국상업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 가산 금액을 납부



3) 6개월 초과 1년까지는 계약당시 소정금리 (한국상업은행 일반연체 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1년 경과시 해약 조치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한 후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반환

○ 시유재산의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해약조치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10. 은행용지 매수자격 : 은행법 등 은행설립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은행

11. 종교용지 매수자격 : 종교시설(개신교) 설립을 조건으로한 실수요자에 한함.

12. 기타 사항

○ 재산목록, 입찰 및 매수신청 유의사항, 계약조건은 서울특별시청(재산관리과 출입문옆 게시판) 게시 (별도로 토지매입안내서 배포)

○ 매각공고 재산증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간이 게시공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매수신청)자는 매각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시가 지지 않습니다.

○ 입찰, 토지매수신청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731-6266~8)로, 체비지상 지장물 철거 관련사항은 도시개발과(☎ 731-6751~3)로 문의





## 채비지 및 목동택지 계약조건

1.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및 수의계약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이하 "갑" 이라 한다) 가 매도대금으로 충당함.
2. 계약 재산이 매수자 (이하 "을" 이라 한다)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전에는 "갑" 의 승인없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1) 계약재산의 전매, 양도
  -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 후 당해 토지의 관리 책임은 "을" 에게 있음.
3. 토지대금을 소정기간내 납부하지 않거나 위 제 2항을 위반하거나 "을"이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자로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갑" 은 "을" 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약할수 있으며 해약 하였을시 계약 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을" 에게 반환함.
4. "갑" 은 당해 계약재산에 부수된 철거및 명도에 관한 것과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5. 지적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을"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6. 지적공부 정리 결과 계약면적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정산 하고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불이지 아니함.
7. "을" 은 계약재산을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내에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목동택지에 한함)

8. "을" 이 위 제 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계약재산을 환매할수 있음. (목동택지에 한함)  
이 경우 환매가격은 낙찰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을" 은 계약재산을 환매하는 "갑" 에게 대항할수 없음.
9.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을" 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을" 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함.
10. 목동택지(종교용지)는 종교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실수요자(개신교)에 한함.
11. 당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에게 결정권이 있음.

1992. 11. 12.  
시장

## 시 유 지 (시유잡종재산) 계 약 조 건

1.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및 수의계약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이하 "갑" 이라 한다) 가 매각대금으로 충당함.
2. 매각대금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하여
  - 1)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 2) 위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해약 조치할수 있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3. 계약재산이 매수자 (이하 "을" 이라 한다)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전에는 서울특별시 (이하 "갑" 이라 한다) 의 승인없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1) 계약재산의 전매, 양도
  -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단, 계약체결 후 당해 토지의 관리책임은 "을" 에게 있음.
4. 위 2,3항을 "을" 이 위반 하였을시 "갑" 은 "을" 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약할수 있으며, 해약 하였을시 계약보증금은 "갑" 의 귀속으로 함.
5. "을" 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자인 경우 계약체결전에 택지취득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함. (타 법령에의거 승인등 필요시 25일 연장)
6. "갑" 은 당해 계약재산에 부수된 철거및 명도에 관한것과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7.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을" 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을" 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함.
8. 당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 에게 결정권이 있음.

## 입찰유의사항

1. 입찰서는 소정란에 공매재산의 공매번호, 입찰금액등을 기재 서명날인하고 예치확인증 원본 과 함께 (입찰용) "공매봉투" 에 넣고 봉합후 접수시킴.
2.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증의 차수별 기재일자와 입찰일자가 같아야 하고, 일자가 상이한 예치확인증은 무효로 함.
3. (입찰용) "공매봉투" 에 수입증지 550원을 붙인 다음 입찰등록 접수창구에 접수시키고 접수번호표를 수령하여야 함.
4. 입찰서의 중요 기재사항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서에 사용한 동일 인장을 정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함.
5.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6.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증에 기재한 성명과 입찰서에 기재한 성명이 일치되어야 함.
7. 등록접수된 입찰서류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수 없음.  
단, 예산회계법 제 98조 제 2항에 의거 재 입찰에 부할 경우 예치확인증은 기 제출한 것으로 활용함.
8. 입찰및 개찰업무를 방해하거나, 동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행위를 할수 없음.
9. 위 1~8항에 대한 주요위반 사항이나 기타입찰 질서문란의 사유가 있을때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함.

10. 은행용지를 입찰하고자 하는 은행법인이 입찰보증금 예치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인이 위임한 제 3자 (가급적 은행임직원) 명의로 예치하되, 입찰의 참가는 위임내용을 소명하는 위임장및 법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11. 기 타

가. 동가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나. 개찰은 입찰 접수 마감후 바로 시작하여 개찰 작업이 종료되면 낙찰자를 발표하고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게시 공고함.

다.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택지취득 허가증 (법인 및 택지소유의 상한초과 취득자의 경우) 및 입찰서에 사용한 인장을 지참하여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응찰자가 토지 위치를 파악하고자 할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에 안내도면을 게시함.(별도 발간 배부하는 토지매입안내서 참조)

마. 시중에서 사용하는 5,000분의 1 지번도등 마 도면중에는 일부 착오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바. 매각 재산목록중에는 토지의 모양, 기준면적의 미달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을수 있으니 당해 재산의 토지활용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함.

사. 도시설계구역의 토지상 건축은 도시설계 내용에 따라 규제사항이 상이하므로 입찰전에 도시설계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함.

아. 아파트 지구, 주구중심, 분구중심 용지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상의 용도에 한정하여 이용할수 있으니 당해 재산의 활용방안을 관계 부서에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함.

# 토지수의계약 매수신청서 유의사항

(재공고입찰에 불인 경우 유찰된 토지)

1. 토지 수의계약 매수 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 시민1과에 접수 시킴.  
(서식 우리시 비치, 무료 배부)
2. 위 신청서를 접수 시킬때 소정 양식의 재산매수견적서 (본인 작성)와 견적금액의 10% 이상 매수신청보증금 예치확인증을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매수신청서에 첨부 제출함. (견적서 서식 및 봉투 우리시 배부)
3.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신청전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 (시청 구내 위치)에 예치하고, 매수신청보증금 예치확인증을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함.
4. 매각 공고후 가장 빠른날에 매수 신청한자중 예정 (공급) 가격 이상의 최고 견적가격으로 신청한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통지함.  
(연락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5. 매수신청서, 재산매수견적서, 매수신청 보증금 예치확인증의 주요 기재사항 (재산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금액 등) 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6. 매각대상 토지중 체비지 및 묵동택지의 예정 (공급) 가격과 가격 유효기간을 공개하며 유효기간내에만 매각하므로 예정(공급) 가격 유효기간에 대해 유의하여야 함.
7. 사유잡종재산은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기타사항은 일반경쟁 입찰 매각시 유의사항 참고.

1993. . .

서울특별시

# 매 매 계 약 서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등            번지            호            면적 :            m<sup>2</sup>

2. 매도대금 : 일금

원정            ₩ \_\_\_\_\_

3.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_\_\_\_\_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서울특별시장은 (갑) 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 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서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4. 계약일자 : 서기 199    년    월    일

매도인 (갑) : 서울특별시

위 대표            서울특별시장            (인)

매수인 (을) : 서울특별시

구            등            번지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약 정 조 항

제 1조 계약보증금은 해약이 되지 않을시 (갑) 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한다.

제 2조 본 계약재산이 (을)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기 전에는 (갑) 의 승인없이 아래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① 본 계약재산의 전매, 양도

㉔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㉕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 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3조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낙찰일(계약일) 익일(199 . . . )로부터 1년의 기간내 납부하되 (본납의 경우 잔금의 50%이상 금액 납부)

① 60일 (199 . . . )까지는 원금을,

② 6개월 (199 . . . )까지는 60일을 제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약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③ 1년 (199 . . . )까지는 6개월을 제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약당시 일반연체 이자율 (연 %)의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 (을)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자인 경우가 계약체결전에 관할구청장의 택지취득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본 계약약정 위 2,3,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때 계약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액은 (을)에게 반환한다.

제 6조 (갑)은 본 계약재산에 부수된 철거및 명도에 관한 것과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조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한다.

제 8조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에게 결정권이 있다.



# 용 지 매 매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지목		면적		지정용도	

위 표시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표한 서울특별시장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위 재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원정  
(₩ 원정) 으로 한다.

② "을" 은 위 매매대금 중 일금 원정 (₩ 원정)  
을 계약체결시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되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며 계약이 되지 않을시 "갑" 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

③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낙찰일 익일 (199 . . . ) 로 부터 1년의 기간내 납부하되 (본납의 경우 잔금의 50% 이상 금액 납부)

④ 60일 (199 . . . ) 까지는 원금 (본납의 경우 잔금의 50% 이상 금액) 을,

⑤ 6개월 (199 . . . ) 까지는 60일을 제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약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⑥ 1년 (199 . . . ) 까지는 6개월을 제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약당시 일반연체이자를 (연 %)의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조 (면적총감 정산) ① 지적공부정리 결과 계약면적의 총감이 있을시에는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정산키로 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불이치 아니한다.

제 3조 (사용제한및 백지의 환대) ① "을" 은 위 재산을 잔금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 이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갑" 은 이를 환대할수 있으며 "갑" 이 "을" 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는 그 이전 등기시 "갑" 을 환대권자로 하는 환대특약등기를 하기로 하며 "을" 은 이를 승락한다.

③ 위 제 ②항에 의하여 환대할 경우 환대가격은 낙찰가격에 (연체이자, 제세 공과금, 기타 제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환대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위 제 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백지를 취득한자도 위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백지를 환대하는 "갑" 에게 대항할수 없다.

제 4조 (행위금지) "을" 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본 계약재산의 전대 (대대, 양여, 증여, 임대, 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을 하지 못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① "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갑" 은 별도의 최고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 1조에 정한 대금을 기일내 납부치 아니하였을 때
2. 제 4조를 위반할 때
3. 본 재산의 대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의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②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예제권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③ 제 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 의 귀속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을" 에게 반환하며, "을" 은 즉시 그 재산을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을" 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 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제세공과금 부담금) "을" 은 계약체결이후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갑" 이 "을" 에게 본 재산을 매각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조 (용지의 관리책임) "을" 은 계약체결 후 본 용지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소유권 이전) ① 본 용지의 소유권 이전은 지적이 확정되고 "을" 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 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전항의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을" 이 책임을 진다.

제 9조 (간선시설의 이용) "을" 이 용지의 사용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비용 (간선시설 공동분담금 등) 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 6조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해 양도의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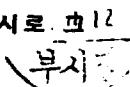
제 7조 을은 본 계약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 8조 (1)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제 2조를 위반할 때
2.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때 또는 용도와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때
3.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5.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 제 2호의 해지권의 동기를 알수있다.

제 9조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때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sup>12</sup>매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부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을은 제 1조의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매각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3. . . .

위 매도자 (갑) 서울특별시

위 대표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종 (인)

위 매수자 (을)





(별지 제 12호 서식-이면)

< 입찰자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인)	○ 전화번호 :



공 매 봉 투

( 입 찰 용 )

접 수 번 호

입찰서와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증  
원본을 넣고 봉하십시오.

수 입 증 지

550원





# 공매 대상 재산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공매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예정가격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쪽수
1	개포	강동구 성내동 467	2,375.3	2,968,750	일반주거지역, 5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무	
2	"	송파구 송파동 148	774.3	1,327,151	일반주거지역	"	
3	"	송파구 송파동 148-2	1,365.5	3,342,744	"	"	
4	가락	송파구 가락동 196-1	1,147.6	2,002,582	"	"	
5	"	송파구 거여동 34-4	292.4	493,864	"	"	
6	"	송파구 마천동 48-4	88.0	85,448	"	"	
7	"	송파구 가락동 197-13	866.9	1,468,529	"	"	
8	구로	영등포구 대림동 786-4	1,959.4	2,558,977	"	유	
9	"	구로구 구로동 84-13	45.7	66,285	"	무	
10	김포	강서구 등촌동 664-12	1,004.1	1,854,573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공항고도보위 구역, 도시설 계지구입안	유	

# 공매 대상 재산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공매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예정가격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쪽수
11	잠실	송파구 잠실동 210-18	99.1	115,353	일반주거지역	무	
12	"	송파구 잠실동 210-38	97.8	113,840	"	"	
13	신림 추가	동작구 사당동 1050-26	82.3		"	유	
14	역촌 추가	서대문구 북가좌동284-2	74.0		"	"	

○ 목동택지

(단위 : 천원)

공매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지목	예정가격	도시계획용도	도면 쪽수
15	목동	양천구 신정동 318-9	1,404.0	종교지 (개신교)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도시설계지역, 도시설계지구 입안예정지	

○ 시유잡종재산

공매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도시계획용도	비고	도면 쪽수
16	노원구 상계동 606-12	전	174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접합		
17	" 606-16	전	170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수의계약 대상 재산 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예정가격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쪽수
1	개포 (도곡)	강남구 도곡동 467-6	14,000.4	86,522,472	일반상업지역, 지역중심	유	
2	"	" 467-7	2,859.7	18,588,050	"	유	
3	"	" 467-8	1,300.0	4,907,500	"	유	
4	"	" 467-9	1,299.9	6,577,494	"	유	
5	"	" 467-11	1,300.2	4,851,047	"	유	
6	"	" 467-12	2,969.8	20,521,318	"	유	
7	"	" 467-13	1,299.8	4,862,552	"	유	
8	"	" 467-14	1,350.2	7,019,690	"	유	
9	"	" 467-16	1,299.3	6,434,134	"	유	
10	"	" 467-19	750.3	3,631,452	일반상업지역, 지역중심	유	
11	"	" 467-20	750.2	4,156,108	"	유	
12	"	" 467-21	700.0	3,073,000	"	유	
13	"	" 467-22	699.7	2,225,046	"	유	
14	개포	강남구 포이동 197	1,042.5	2,189,250	일반주거지역 주구중심	무	
15	"	" 197-5	1,224.0	2,913,120	"	무	

# 수익세액 대상 재산 목록

○ 제비지

(단위 : 원천)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예정가액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책수
16	개포	서초구 양재동 2-19	370.1	803,117	일반주거지역	유	
17	"	" 2-21	301.3	671,899	"	유	
18	"	" 85-5	252.2	468,048	"	무	
19	"	" 90-2	900.8	1,798,499	일반주거지역 유치원 용지	유	
20	"	" 95-8	178.3	382,632	일반주거지역	유	
21	"	서초구 양재동 210-6 과천시 주암동 9	93.8 55.3	292,087	"	유	
22	"	서초구 양재동 386-10	408.7	653,103	"	유	
23	"	" 249-12	360.0	691,200	"	유	
24	"	" 291-7	324.7	457,827	"	유	
25	"	서초구 우면동 6-1	177.2	232,132	"	무	
26	"	" 9-10	149.1	204,417	"	유	
27	"	강남구 포이동 168-7	276.9	481,806	"	무	
28	"	" 168-8	276.9	481,806	"	무	
29	"	" 265-4	164.7	260,226	"	무	부지
30	"	강남구 도곡동 414-9	254.8	384,748	"	무	
31	"	" 410-8	330.7	1,351,902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지정제한축선 2m에 저축	무	



# 수의계약 대상 재산목록

○ 제비지

(단위 : 원천)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예정가격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책수
32	개포	강남구 포이동 179-5	177.8	290,348	일반주거지역	유	
33	"	" 171-6	176.0	381,744	"	무	
34	가락	송파구 거여동 10-5	161.1	185,427	"	유	
35	"	송파구 방이동 200-1	915.2	1,995,136	"	유	
36	"	" 224-6	301.6	338,999	"	무	
37	"	송파구 문정동 25-2	221.8	242,871	"	무	
38	"	" 67-17	251.5	526,390	"	무	
39	"	" 84	1,636.8	3,650,064	"	유	
40	"	" 83-23	436.9	856,324	"	무	
41	"	" 143-8	113.5	120,424	"	무	
42	"	송파구 가락동 78	6,195.1	44,493,209	일반상업지역	무	
43	"	" 77-2	1,076.6	4,295,634	"	유	
44	"	" 98-1	1,400.4	5,937,696	"	유	
45	"	" 97	55.6	107,864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구역	유	
46	"	" 176-1	381.0	643,890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무	
47	"	" 196-2	1,147.3	1,801,261	일반주거지역	무	
48	"	송파구 마천동 31-1	639.5	1,400,505	준주거지역	무	

# 수의계약 대상 재산 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 제 자	면 적 (㎡)	예 정 가 액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 무	도면 적수
49	가 락	송파구 마천동 30	552.9	939,930	준 주거지역	무	
50	"	" 30-4	460.5	704,565	"	무	
51	"	" 32	667.4	1,588,412	"	유	
52	"	송파구 오금동 113-4	282.8	554,288	일반주거지역	유	
53	"	" 85-9	245.7	393,120	"	무	
54	"	" 114-31	294.3	481,181	"	무	
55	"	" 116-10	164.6	172,337	"	무	
56	"	" 120-28	312.8	331,568	"	무	
57	"	" 120-22	265.1	310,167	"	무	
58	"	" 53-9	276.4	294,919	"	무	
59	"	" 130-5	444.1	961,033	"	유	
60	"	" 85-11	215.3	207,765	"	무	
61	"	" 114-2	223.7	244,952	"	무	
62	"	송파구 송파동 173-6	397.7	672,511	"	무	
63	"	" 174-5	140.4	163,286	"	무	
64	잠 실	" 122-8	234.8	291,152	"	무	
65	"	" 97	103.8	579,204	일반주거지역, 4층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유	

# 수의계약 대상 재산 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예정가격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쪽수
66	잠실	송파구 석촌동 289-2	333.1	462,676	일반주거지역	무	
67	암사	강동구 암사동 458-1	129.1	169,896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무	
68	역촌가	은평구 용암동 597-21	60.8	57,760	일반주거지역	무	
69	경인	양천구 신월동 189-18	91.2	81,624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2구역	무	
70	"	양천구 신월동 504-13	108.9	152,460	일반주거지역	유	
71	영동가	서초구 방배동 481-10	710.6	2,449,439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무	
72	"	서초구 방배동 438-23 438-38	149.5 74.7	1,015,626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유	
73	"	" 458-13	96.5	105,185	일반주거지역	무	
74	영동 1	서초구 양재동 4-1	330.7	1,487,820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무	
75	"	" 7-44	469.9	868,846	일반주거지역	유	
76	"	" 16-43	221.1	504,551	"	유	
77	"	서초구 서초동 1332-6	893.5	2,055,944	일반주거지역 9차트지구, 주구 중심, 도시계획결정지	무	
78	"	서초구 서초동 1714-34	389.8	1,520,220	일반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무	
79	"	서초구 반포동 49-8	1,401.7	3,579,942	일반주거지역	유	
80	"	강남구 도곡동 944-8	723.3	1,374,270	"	유	
81	영동 2	강남구 삼성동 92-6	251.7	439,217	"	무	

# 수의계약 대상 재산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공급가액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쪽수
82	영동 2	강남구 삼성동 95-7	128.3	209,258	전용주거지역	무	
83	"	" 94-7	109.6	173,168	"	무	
84	"	" 162-10	87.2	241,806	일반주거지역, 업무지구, 도시설계구역	유	
85	"	강남구 역삼동 752-54	73.2	108,117	일반주거지역	유	
86	"	강남구 논현동 91	401.7	3,006,323	일반주거지역, 일부상업지역, 2종 미관지구	유	
87	"	" 62-12 62-22	374.6 82.7	3,153,999	일반주거지역, 일부상업지역, 2종 미관지구	무	
88	"	강남구 청담동 7-8	62.8	89,114	일반주거지역	유	
89	"	" 13-25	63.1	90,549	"	유	
90	"	강남구 삼성동 54-10	69.0	229,563	"	유	
91	"	강남구 대치동 964-6	377.5	523,215	"	무	
92	"	" 1024-3	576.5	2,399,397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무	
93	김포	양천구 목동 552-1	106.1	92,307	일반주거지역	무	
94	"	" 558-5	121.6	113,088	"	무	
95	"	강서구 화곡동 1059-16	68.1	49,713	일반주거지역 공항공도보위 구역	무	
96	"	강서구 내발산동 696-7	92.2	74,682	일반주거지역 공항공도4구역	무	

# 수의계약 대상 재산목록

○ 제비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공급가격	도시계획용도	지장물 유무	도면 책수
97	김포	강서구 내발산동 711-5	341.8	283,694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4구역	무	
98	"	" 652-1	401.4	656,289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보위 구역	유	
99	"	" 649-7	230.1	218,365	"	무	
100	"	강서구 등촌동 684-8	380.9	583,920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보위 구역, 도시설계 구역입안	무	
101	"	" 653-23	79.1	105,441	"	유	
102	"	" 660-10	855.8	1,756,102	2종 미판지구 공항고도보위 구역, 도시설계 구역내	무	
103	"	" 661-2	524.2	890,092	"	무	
104	시흥	구로구 독산동 971-7	258.2	251,745	일반주거지역	유	
105	도봉	도봉구 도봉동 581-8	205.5 중 72.9	80,919	일반주거지역 고도최고지구 (공유지분)	유	

시정

# 수의계약 대상 재산목록

○ 목동백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공급가액	도시계획용도	비고	도면 축수
106	목동	양천구 목동 907	4,136.9	11,484,035 ( '93.11.16)	일반상업용지, 1종 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07	"	" 907-12	3,979.6	10,545,940 ( '93.11.16)	"		
108	"	" 923-6	4,379.5	10,024,678 ( '93.11.18)	"		
109	"	" 923	4,036.7	8,973,585 ( '93.11.18)	"		
110	"	" 923-3	4,073.5	8,965,774 ( '93.11.18)	"		
111	"	" 923-5	4,644.4	10,426,678 ( '93.11.18)	"		
112	"	양천구 신정동 321-7	2,049.7	4,435,551 ( '93.11.16)	"		
113	"	" 321-6	1,650.1	3,570,817 ( '93.11.16)	"		
114	"	" 323-9	5,191.2	10,662,725 ( '93.11.16)	"		
115	"	" 323-17	5,215.6	10,712,843 ( '93.11.16)	"		
116	"	양천구 목동 919	25,285.8	53,428,896 ( '93.11.21) <b>지정</b>	백화점용지, 1종 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17	"	" 905-28	500.0		은행용지, 1종 미관지구, 일반 상업지역, 도시 설계구역		
118	"	양천구 신정동 319-22	648.1		"		

# 수익의약 대상 재산 기록

○ 목동백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공급가격	도시계획용도	비고	도면 쪽수
119	목동	양천구 신정동 319-13	1,115.8		은행용지, 1종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20	"	" 329-10	1,238.3		근린생활시설 용지, 일반주거지역		
121	"	" 311-3	730.7		유지원 용지,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3구역		
122	"	" 328-3	992.0		"		
123	"	목동 909-5	1,009.7		일반상업용지, 2종 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24	"	" 907-5	1,650.1		일반상업용지, 1종 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25	"	" 907-10	1,275.5		"		
126	"	" 907-14	1,151.8		"		
127	"	" 907-15	972.0		"		
128	"	" 907-17	1,043.8		"		
129	"	" 907-18	690.0		"	시장	
130	"	" 905-27	1,072.6		"		
131	"	" 905-31	499.9		"		
132	"	" 905-10	1,584.5		"		
133	"	" 905-21	2,275.0		"		
134	"	" 905-22	1,735.0		"		

# 수업지역 대상 재산 목록

○ 목동백지

(단위 : 천원)

재산 번호	지구명	소재지	면적 (㎡)	공급가액	도시계획용도	비고	도면 책수
135	목동	양천구 목동 905-28	1,133.0			일반상업용지, 1종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36	"	" 923-7	2,453.9			"	
137	"	" 923-4	2,160.1			"	
138	"	양천구 신정동 318-6	2,416.1			"	
139	"	" 318-5	2,170.5			"	
140	"	" 318-1	1,918.9			"	
141	"	" 318-8	908.7			"	
142	"	" 318-7	929.7			"	
143	"	" 319-19	567.5			"	
144	"	" 319-20	567.6			"	
145	"	" 319-21	865.1			"	
146	"	" 319	3,161.9			"	
147	"	" 323-7	900.2			일반상업용지, 1종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공항고도3구역, 도시설계구역	
148	"	" 323-4	720.9			"	
149	"	" 323-5	899.8			"	
150	"	" 323-10	899.8			"	

제 11 12  
시정



## 수의계약 대상 재산목록

○ 시유잡종재산

재산 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도시계획용도	비 고	도면 쪽수
151	종로구 신영동 177-10	전	209.0	일반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		
152	강남구 역삼동 681-43	대	394 중 348.59	일반주거지역, 일부상업지역, 2종 미관지구		
153	강남구 역삼동 684- 7	대	473.5중 361.23	일반주거지역		
154	강남구 역삼동 669- 5	대	186.4중 79.1	전용주거지역		
155	강동구 명일동 262- 2	대	158.0	일반주거지역, 도로에 접함		
156	마포구 서교동 398-15	대 건	540.5 314.36	일반주거지역		
157	성동구 옥수동 385	대 건	1,108.0 322.84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재개발)		
158	용산구 한남동 731-12	대	76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159	도봉구 수유동 50-8	대 건	240.7 139.87	일반상업지역		